

택시 사업구역 밖 귀로영업(타시도 영업) 관련 안내

[타시도영업 위반 사례]

- ▶ 택시호출로(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 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)같은 사업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신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의 갓길에 있는 때에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볼 수 있으나, 돌아오는 역방향에 위치하여 해당 승객을 태우러 거꾸로 운행하여야 한다든지 귀로하는 도로를 크게 벗어나 우회를 하여야만 해당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때에는 일시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없어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합니다.
- ▶ 자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사업구역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에는 곧바로(5분 이내) 되돌아와야 하며,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정차를 한 후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 구역 밖 영업으로 보아야 합니다.
승객의 목적지가 타 사업구역인 어느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 곧바로(5분 이내)자신의 사업구역으로 귀로를 하고자 하였으나,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(용변, 식사 등)이 발생하여 5분(정차)이 경과한 때에는 이후 승객의 탑승요구가 있다하더라도 운수종사자는 타 사업구역 택시 이용을 안내하고 빈차로 되돌아와야 합니다. (이를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사업구역 간 극심한 마찰 및 다툼이 발생)
- ▶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영업 중 사업구역 밖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호출을 받고 빈차인 상태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승객(가족 및 지인 포함)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합니다.
- ▶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경우에만 사업구역 밖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.
 1.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.
 2.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.

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